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6년 5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6년 5월 16일

3. 제안이유

- 임대주택사업자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확대 및 일부 조문을 보완·정리하기 위한 것임.

4. 주요골자

- 임대주택사업자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확대
 - 공동주택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월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m² 이하에서 100m² 이하로 확대하고,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함.
(안 제19조 제1항)

○ 일부 조문의 보완 및 정리

- 1가구 1주택의 개념 정리 (안 제13조 제3항)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정리 (안 제14)
- 농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범위의 정리 (안 제19조 제1항)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안 제25조)

5. 검토의견

총 청북도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현행 조례 제5장 (서민주택건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3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및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과 제6장(농어촌지원을 위한감면) 제19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조항에 대한 임대주택 사업자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확대 및 일부 조문의 보완정리 와 제8장 (보칙) 규정에 있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조항의 신설과 조항 일련번호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공동주택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건축한후 미분양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매입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2월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확대함과 아울러 1가구 1주택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조문을 보완 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하는경우 그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하도록 확대하고,

전용면적 40m²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60m²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만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신설코자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m²이하에서 100m²이하로 확대하고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함과 아울러 각호의 해당 사업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명문화 하려는 내용이며,

검인계약서 사용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자구의 삽입을 통해 조문을 보완 정리코자 하였으며,

제8장의 보칙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감면규정이 2가지이상 적용되는 경우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사업자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확대지원 및 일부 조문을 보완 정리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첨부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